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3
----------	-----

2022년 9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3. 상정일자 :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9월 2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1)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구 분	시설현황	
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5층, 8~10층)</li> <li>- 전용면적 : 3,665m<sup>2</sup></li> <li>- 주요시설 : 정책연구실,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지역복지통합본부, 경영기획실 등</li> </ul>	
후석동 별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6층)</li> <li>- 전용면적 : 814.64m<sup>2</sup></li> <li>- 주요시설 : 서울복지교육센터, 찾동추진지원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li> </ul>	

###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등

3) '23년 총 소요예산(안) : 75,460,934천원

4) '23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57,167,542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경비 등) : 18,293,392천원

5)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중심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 시민 일상 속 복지욕구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동의안 제출 경위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1)</sup>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2023회계연도 출연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지방재정법」 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sup>2)</sup>는 서울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매년 출자·출연해온 기존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대상이 되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2 복지재단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검토

- 복지재단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설립되었음.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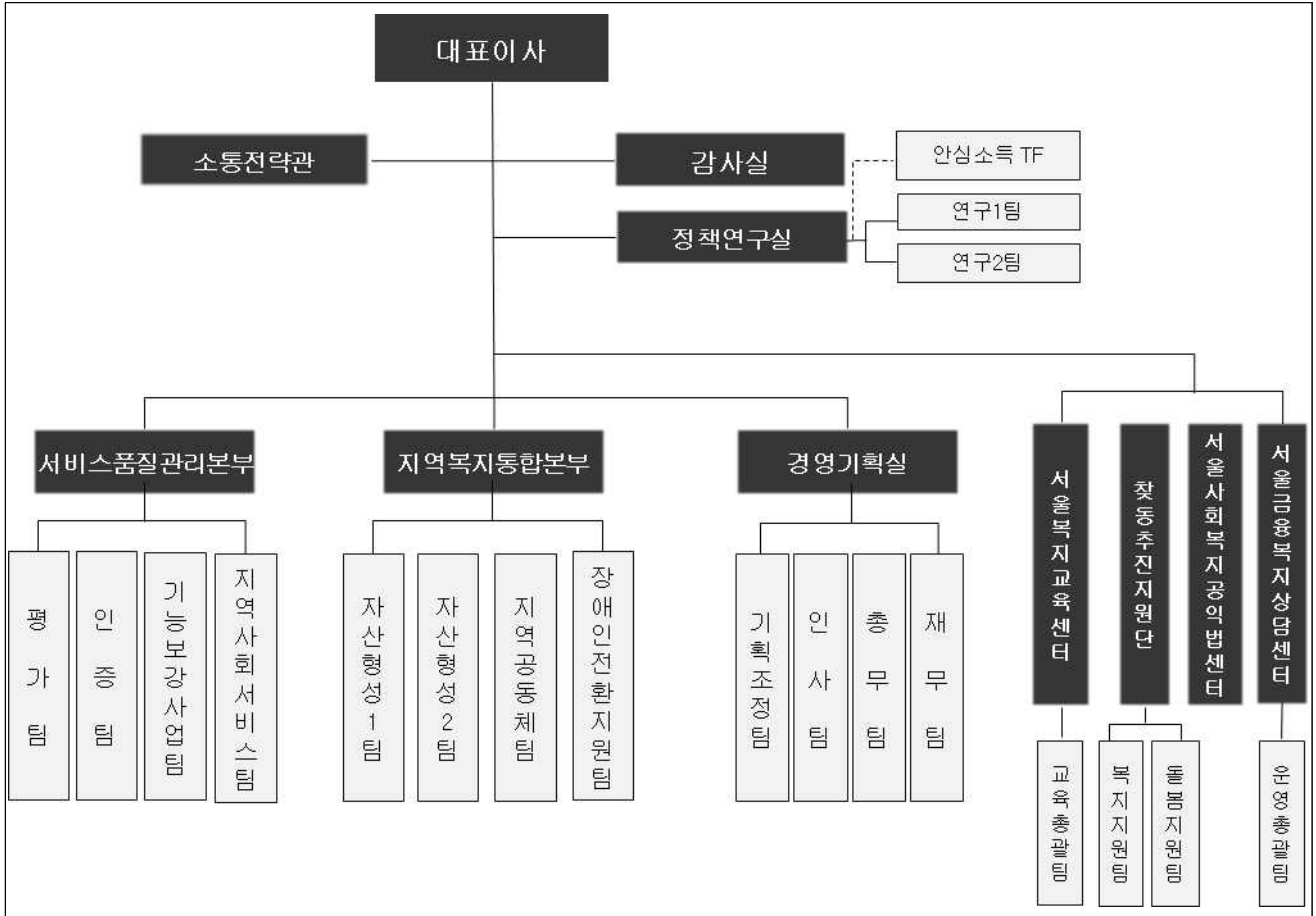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표> 서울시복지재단 조직도

(’22. 8. 18. 기준)



○ 현재 인력 정원은 187명, 현원 186명이며, 상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서울시 복지재단 정·현원표

(’22. 7.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대표이사	소계	일반직·특정직								임피제 별도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미화직	
정원	187	1	186	2	10	22	28	29	56	37	2	-
현원	186	1	185	2	9	21	28	28	48	43	2	4

※ 기간제근로자 28명 별도

- 집행기관은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연금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복지재단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서울시 복지재단 예산현황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합 계	59,856	50,349	45,155	38,018	35,400
출 연 금	50,680	41,835	38,636	32,359	26,072
사 업 수 입	625	480	464	510	510
사 업 외 수 입	1,935	2,182	2,213	2,166	3,390
잉 여 금	6,616	5,852	3,842	2,983	5,429

- 특히 복지재단은 최근 5년간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복지재단의 조직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인력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인건비의 확대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출연금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어 장기적으로 예산 부담이 될 소지가 있음.

<표> 서울시 복지재단 최근 5년 인원 변화 및 인건비 변화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인원 (정원/현원)	151 / 149	164 / 162	171 / 170	180 / 176	180 / 178	정규직
인건비 예산	9,382,510	9,837,448	10,596,225	11,293,833	11,820,387	수당, 퇴직급여 포함

- 이처럼 복지재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은 재단 예산의 많은 부분이 출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함. 현재와 같이 복지재단의 수입이 보조금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출연금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정책연구 및 경영측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분야별 주요사업비 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일반회계 사업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서비스 확대’ 사업에는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사업 등),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운영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독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50대 남성에 대한 발굴·지원·연계 등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행감시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도 지적된바, 신규로 설치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립가구 뿐만 아니라 연령별 지원방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컨트



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올해부터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연구조사를 통해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서울시 복지재단 분야별 사업비 현황(세출예산 중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사업비 구성			기금회계 사업비 구성		
예산과목	사업비	비율%	예산과목	사업비	비율%
합계	9,388	100	합계	31,242	100
선도적복지정책개발	1,705	18	서울꿈나래통장	1,517	5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양성	1,792	19	희망두배청년통장	22,513	72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서비스 확대	3,372	36	장애인이름통장	3,382	11
동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	399	4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760	2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575	6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70	0
변화와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1,545	16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	3,000	10

### 3

###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복지재단의 출연근거<sup>3)</sup>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sup>4)</sup>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음.

- 다만, 출연동의안은 출연여부(예산안 편성)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 심의 시, 복지재단의 신규 사업추진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 및 타 사업과의 중복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임. 또한 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4)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63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구 분	시설현황
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5층, 8~10층)</li> <li>- 전용면적 : 3,665<math>m^2</math></li> <li>- 주요시설 : 정책연구실,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지역복지통합본부, 경영기획실 등</li> </ul> 
흑석동 별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6층)</li> <li>- 전용면적 : 814.64<math>m^2</math></li> <li>- 주요시설 : 서울복지교육센터, 찾동추진지원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li> </ul>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등

다. '23년 총 소요예산(안) : 75,460,934천원

라. '23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57,167,542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경비 등) : 18,293,392천원

마.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중심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 시민 일상 속 복지욕구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박성찬 (☎ 2133-7318)